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208호, 2024. 2. 6 공포, 2024. 5. 7 시행)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아닌 자의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동 법 시행령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행위를 추가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현행 별표3 개정)

법률 제27조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제31조에서 과태료 부과 행위를 추가함에 따라 시행령 별표3에 과태료 부과행위 반영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1호	100		
나.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2호	100		
다.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 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 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th></tr> <tr> <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이상 위반</th></tr> </thead> <tbody> <tr> <td>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td><td>법 제31조제2항</td><td colspan="3">100</td></tr> <tr> <td>나. 증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td><td>법 제31조제1항</td><td>300</td><td>400</td><td>500</td></tr> </tbody> </table>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100			나. 증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 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th></tr> <tr> <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이상 위반</th></tr> </thead> <tbody> <tr> <td>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td><td>법 제31조제2항 제1호</td><td colspan="3">100</td></tr> <tr> <td>나.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증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td><td>법 제31조제2항 제2호</td><td colspan="3">100</td></tr> <tr> <td>다. 증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td><td>법 제31조제1항</td><td>300</td><td>400</td><td>500</td></tr> </tbody> </table>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1호	100			나.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증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2호	100			다. 증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100																																											
나. 증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가.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증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1호	100																																											
나. 법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증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제2항 제2호	100																																											
다. 증견기업자가 아닌 자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증견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	법 제31조제1항	300	400	500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4362